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12월 1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12월 1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소통담당관 마정하)

가. 제안이유

-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다변화 및 사용자 증가로 구민과의 소통방법이 점점 다양화됨에 따라 각종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다른 법령과의 관계(안 제3조)
-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시행 등(안 제4조)
- 구민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홍보대사 운영(안 제5조)
- 온라인 홍보 활동단 운영(안 제6조)

- 홍보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등에 대한 표창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① 주요 제정 내용

- 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시행(안 제4조제1항)
- 참여자에 대한 보상(안 제4조제3항)
 - 홍보 등을 위한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,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음
- 홍보대사의 위촉(안 제5조)
 - 임기 2년(연임가능), 명예직,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활동비 지급 가능
- 온라인 홍보 활동단의 운영(안 제6조)
 - 임기 1년(연임가능), 교육과 연수, 견학에 필요한 예산 및 활동비 지원 가능
- 홍보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등에 대한 표창(안 제7조)

② 타 자치구 제정 현황

-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(2020.01.09. 제정)
- 중구(서울시 포함) 등 14개구 :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
- 중구 등 13개구 : 소셜미디어(SNS) 운영 조례 제정

③ 종합의견

- 현재 구정홍보의 주요수단은 금천향기 등 지면을 활용한 소식지 배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주요 홍보 및 정보제공 수단으로 활용 중이나 개인 모바일을 통한 정보전달 수단이 일반화되면서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카카오톡

토리, 트위터, 블로그 등 SNS가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.

- 우리구에서도 SNS를 운영 중에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단순한 정보 게시와 전달 수단으로 운영되는 한계로 제약이 따르는 바, 소셜미디어를 체계적·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
- 구민뿐만 아니라 참여자에게 우리 구정에 대한 행정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공하고
- SNS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이 「공직선거법」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